

# 평창군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474
----------	-----

제출년월일 : 2022. 3.

제 출 자 : 평 창 군 수

### 1. 제안이유

평창군이 설치한 야영장의 관리·운영을 위해 2009. 6. 19. 조례 제정하여 운용해 왔으나, 2015. 2. 6. 일부 개정한 이래 이용료 등을 변경하지 않아 현실에 맞게 이를 조정하는 한편, 신설되는 평창국민여가캠핑장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며, 그 밖에 현행 조례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2. 주요내용

- 가. 제명을 관련법 용어에 맞게 「평창군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로 함
- 나. 신설되는 평창국민여가캠핑장을 포함하여 적용 범위를 정함(안 제2조)
- 다. 야영장별 시설의 종류를 실지에 맞게 정리하고 이용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함(안 제3조 및 별표)
- 라. 이용료 감면 기준을 정함(안 제4조)
- 마. 이용 제한에 대해 정함(안 제5조)
- 바. 환급 등의 적용에 대해 정함(안 제6조)
- 사. “관리위탁” 등에 관하여는 공유재산법령 등에서 그 기준을 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준용하도록 함(안 제7조)
- 아. 현행 조례의 내용 중 “입장료” 등 적용하지 않는 내용과 이와 관련된 내용을 삭제함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별첨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입법예고(2021.12.17. ~ 2022.1.6.) 결과, 별첨(제출의견 일부 반영)

2) 재입법예고(2021.12.17. ~ 2022.1.6.)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4) 부패영향평가 : 부패유발요인 없음

5) 성별영향분석평가 : 개선권고 사항(이용료 감면 대상에 ‘한부모가족’,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추가) 반영

## 평창군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평창군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평창군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창군이 설치한 야영장의 관리와 운영 및 이용료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야영장 등 평창군이 설치한 야영장(이하 “야영장”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1. 방림면 방림리의 “평창국민여가캠핑장”
2. 대화면 대화리의 “꿈의대화캠핑장”
3. 용평면 노동리의 “계방산오토캠핑장”

**제3조(이용료)** 야영장 이용료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4조(이용료 감면)** ① 이용료의 감경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편익시설의 이용료는 감경하지 않는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의 100분의 30을 감경한다.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 나.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라.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구성원
- 마. 평창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주민
- 바. 평창군이 주관·주최하는 행사를 위해 이용하는 경우
- 사.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학생의 교육 및 수련활동을 위해 이용하는 경우

아. 관내 사회단체가 비영리 목적의 행사를 위해 이용하는 경우

2. 비수기 중에 14일 이상 계속하여 장기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 일수별로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비율을 감경한다.

가. 14일 : 이용료의 100분의 30

나. 15일부터 30일까지 : 이용료의 100분의 40

다. 31일 이상 : 이용료의 100분의 50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를 수행하기 위해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용료 전액을 면제한다.

③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약이나 그 밖에 관광 진흥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④ 감면 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에서 하나만을 적용한다.

**제5조(이용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야영장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사회질서와 선량한 풍속에 반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야영장 시설을 손상하거나 유지관리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3. 영업행위를 하거나 이용자 수칙을 위반하는 경우

**제6조(환급 등의 적용)** 사전 예약을 통해 이용료를 납부한 경우의 예약 취소 등에 따른 환급 또는 배상 등에 대하여는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3항에 따라 고시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적용한다. 이 경우 성수기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로 한다.

**제7조(준용)** ① 야영장의 관리위탁에 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및 「평창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을 준용한다.

② 이용료 징수 등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야영장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 야영장 이용료(제3조, 제4조 및 제6조 관련)

### 1. 평창국민여가캠핑장(방림면 방림리)

유형	시설	규모	이용료 징구기준	성수기	비수기	
					주말	주중
일반형	야영테크	5m×14m	1회/1일	50,000원	40,000원	30,000원
	야영테크	5m×8m	1회/1일	40,000원	35,000원	25,000원
	야영테크	4m×8m	1회/1일	40,000원	35,000원	25,000원
	야영테크	4m×4m	1회/1일	35,000원	30,000원	25,000원

### 2. 꿈의대화캠핑장(대화면 대화리)

유형	시설	규모	이용료 징구기준	성수기	비수기	
					주말	주중
일반형	야영테크	3m×6m	1회/1일	40,000원	35,000원	25,000원
고정식	황토방1		4인/1실	150,000원	150,000원	100,000원
	황토방2		4인/1실	120,000원	120,000원	80,000원
	글램핑		4인/1실	120,000원	120,000원	80,000원
	오두막집		4인/1실	80,000원	80,000원	50,000원
	돛형텐트		4인/1실	60,000원	60,000원	40,000원
유형	시설		이용료 징구기준	주간+야간	야간	주간
편의시설	다목적무대		1일	200,000원	150,000원	100,000원

### 3. 계방산오토캠핑장(용평면 노동리)

유형	시설	규모	이용료 징구기준	성수기	비수기	
					주말	주중
일반형	야영테크	5m×7m	1회/1일	40,000원	35,000원	25,000원
	야영테크	4m×4m	1회/1일	35,000원	30,000원	25,000원
	야영테크	3m×3m	1회/1일	30,000원	30,000원	25,000원
오토캠핑	오토캠핑장		1개소/1일	40,000원	35,000원	25,000원
카라반형	카라반		1대/1일	120,000원	120,000원	110,000원
	카라반사이트		1개소/1일	50,000원	40,000원	25,000원
고정식	캐빈하우스		4인/1실	140,000원	120,000원	80,000원
	통나무집		4인/1실	120,000원	100,000원	70,000원
유형	시설		대상		이용료 징구기준	
편의시설	주차장		시설이용자 일반차량		1대 초과시	5,000원
			시설이용자 카라반		1구획/1일	5,000원

## 비고

1. “성수기”와 “주말”의 기준은 아래와 같으며, 예약 취소 등에 따른 환급·배상 등의 기준에 관하여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II 중 제26호의 숙박업 기준을 적용한다.

가. 성수기 : 7월 1일 ~ 8월 31일

나. 주말 : 금요일 숙박, 토요일 숙박, 공휴일 전일(前日) 숙박

2. “1일”의 시간 기준은 당일 14시부터 익일 11시까지이며, 퇴실시간을 초과할 때의 이용료 추가 기준은 다음과 같다.

초과시간별	1시간 이상 2시간 미만	2시간 이상 4시간 미만	4시간 이상
추가 이용료	10,000원	20,000원	1일 이용료

3. 고정식 시설에 대하여는 기준정원을 초과하는 경우 1인당(13세 이하는 제외) 5,000원을 추가한다.
4. 이용료의 감면 대상인 경우에는 감면 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서(신분증 또는 서류 등)를 제시하여야 한다.
5. 감면 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에서 하나만을 적용한다.

# 관계법령 발췌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 약칭: 공유재산법 시행령 )

**제14조(사용료)**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중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한 시설인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그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간별이나 횟수별로 그 재산의 사용료를 정할 수 있다.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 약칭: 공유재산법 )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료를 산출하여 매년 징수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제20조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로 본다.

⑤ 제4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는 관리위탁의 조건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행정재산을 제3자에게 전대(轉貸)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가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이용료를 관리위탁받은 행정재산의 관리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거나, 그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증대된 이용료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입으로 할 수 있다.

⑦ 지방자치단체는 관리위탁을 받은 자에게 관리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⑧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관리위탁을 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2. 관리위탁의 기간 및 수탁재산의 관리
3. 제6항에 따른 이용료의 경비에의 충당
4. 이용료 증대분의 전부 또는 일부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 수입으로의 대체
5. 그 밖에 관리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80조(연체료의 징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의 사용료, 대부료, 매각대금, 교환차금 및 변상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내야 할 금액(징수를 미루거나 나누어 내는 경우 이자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체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체료 부과대상이 되는 연체기간은 납기일부터 60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제81조(변상금의 징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용·수익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공유재산 또는 물품을 사용·수익하거나 점유(사용·수익허가나 대부계약 기간이 끝난 후 다시 사용·수익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공유재산 또는 물품을 계속 사용·수익하거나 점유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이하 “무단점유”라 한다)를 한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재산 또는 물품에 대한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변상금”이라 한다)을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상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1. 등기부나 그 밖의 공부(公簿)상의 명의인을 정당한 소유자로 믿고 상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권리를 취득한 자(취득자의 상속인과 그 포괄승계인을 포함한다)의 재산이 취득 후에 공유재산 또는 물품으로 판명되어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 경우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재해대책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일정 기간 공유재산 또는 물품을 점유하게 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한 경우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무단점유를 한 자의 무단점유 경위(經緯) 및 경제적 사정과 무단점유지의 용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의 범위에서 변상금의 징수를 미루거나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
- ③ 변상금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제23조 및 제33조에 따른 사용료 및 대부료의 조정은 하지 아니한다.

**제97조(「지방재정법」 등의 준용)** ① 공유재산 및 물품의 계약을 위한 입찰공고·계약서 작성 등 계약절차, 금전채권과 채무의 소멸시효,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 ② 제22조제1항에 따른 사용료, 제32조제1항에 따른 대부료, 제80조에 따른 연체료 및 제81조제1항에 따른 변상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약칭: 국가유공자법 )

**제6조(등록 및 결정)** ①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되려는 사람(이하 이 조

에서 “신청 대상자”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처 소속 공무원이 신청 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등록을 신청할 수 있고, 그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신청 대상자가 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제67조(고궁 등의 이용지원)**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과 공원 등의 시설 이용료를 받지 아니하거나 할인할 수 있다.

## 장애인복지법

**제3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은 장애인과 장애인을 부양하는 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장애인의 자립을 촉진하기 위하여 세제상의 조치,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그 밖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32조(장애인 등록)** ① 장애인, 그 법정대리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호자(이하 “법정대리인등”이라 한다)는 장애 상태와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등록을 신청한 장애인이 제2조에 따른 기준에 맞으면 장애인등록증(이하 “등록증”이라 한다)을 내주어야 한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약칭: 기초생활보장법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급권자”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2. “수급자”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

## 한부모가족지원법 ( 약칭: 한부모가족법 )

**제2조(국가 등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의 복지를 증진할 책임을 진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의 권익과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모” 또는 “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자를 말한다.

가.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하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遺棄)된 자

나. 정신이나 신체의 장애로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자

다. 교정시설·치료감호시설에 입소한 배우자 또는 병역복무 중인 배우자를 가진 사람

라. 미혼자{사실혼(事實婚) 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한다}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규정된 자에 준하는 자로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자

2. “한부모가족”이란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을 말한다.

3. “모자가족”이란 모가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世代員)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를 포함한다}인 가족을 말한다.

4. “부자가족”이란 부가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를 포함한다}인 가족을 말한다.

5. “아동”이란 18세 미만(취학 중인 경우에는 22세 미만을 말하되,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취학 중인 경우에는 병역의무를 이행한 기간을 가산한 연령 미만을 말한다)의 자를 말한다.

## 소비자기본법

**제16조(소비자분쟁의 해결)** ② 국가는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을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제정할 수 있다.

##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소비자분쟁해결기준)** ①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으로 구분한다.

② 제1항의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제2항의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제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제3조(품목 및 보상기준)** 이 고시에서 정하는 대상품목, 품목별분쟁해결기준, 품목별 품질보증기간 및 부품보유기간, 품목별 내용연수표는 각각 별표 I, 별표 II, 별표 III, 별표 IV와 같다.

<별표 I>

대 상 품 목

번호	업 종	품 종	해 당 품 목
26	숙박업	○ 숙박업	호텔, 여관, 펜션, 민박, 휴양림, 오토캠핑장, 캠핑장

<별표 II>

품 목 별 해 결 기 준

26. 숙박업(1개 업종)

숙박업 (1-3)		
분 쟁 유 형	해 결 기 준	비 고
1) 성수기 주중 ① 소비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취소 또는 계약체결당일 취소 -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취소 -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취소 -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 -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또는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②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취소 -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취소 -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취소 -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 -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또는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 계약금 환급 ○ 총요금의 10% 공제후 환급 ○ 총요금의 30% 공제후 환급 ○ 총요금의 50% 공제후 환급 ○ 총요금의 80% 공제후 환급 ○ 계약금 환급 ○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10% 배상 ○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30% 배상 ○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50% 배상 ○ 손해배상	* 성수기는 사업자가 약관에 표시한 기간을 적용하되 약관에 관련 내용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간을 적용함. · 여름시즌: 7.15~8.24 · 겨울시즌: 12.20~2.20 * 주말 : 금요일· 토요일 숙박, 공휴일 전일 숙박 * 소비자가 사용당일 사용예정시간까지 통보가 없는 경우에는 사용당일 취소로 봄.

숙박업 (2-3)		
분 쟁 유 형	해 결 기 준	비 고
2) 성수기 주말 - 소비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취소 또는 계약체결당일 취소 ·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취소 ·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취소 ·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 ·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또는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 사업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취소 ·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취소 ·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취소 ·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 ·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또는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3) 비수기 주중 -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 사용예정일 2일 전까지 취소 ·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 ·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또는 연락 없이 불참 -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 사용예정일 2일 전까지 취소 ·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 ·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4) 비수기 주말 - 소비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 사용예정일 2일 전까지 취소 ·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 ·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또는 연락 없이 불참 - 사업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 사용예정일 2일 전까지 취소 ·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 ·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 계약금 환급 ○ 총요금의 20% 공제후 환급 ○ 총요금의 40% 공제후 환급 ○ 총요금의 60% 공제후 환급 ○ 총요금의 90% 공제후 환급 ○ 계약금 환급 ○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20% 배상 ○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40% 배상 ○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60% 배상 ○ 손해배상 ○ 계약금 환급 ○ 총요금의 10% 공제 후 환급 ○ 총요금의 20% 공제 후 환급 ○ 계약금 환급 ○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10% 배상 ○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20% 배상 ○ 계약금 환급 ○ 총요금의 20% 공제 후 환급 ○ 총요금의 30% 공제 후 환급 ○ 계약금 환급 ○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20% 배상 ○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30% 배상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1. 비용발생 요인

- 없음

## 2. 미첨부 근거 규정

- 「평창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제1호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 3. 미첨부 사유

- 이 조례의 시행으로 인한 비용발생 없음

## 4. 작성자

작성자	평창군 경제건설국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연락처	(033) 330 - 2542

# 타시군 사례 - 야영장 이용료 [ 2022. 1. 12. ]

(시군) 야영장 <조례명>		종류/규모	성수기	비수기 주말공휴일	비수기 평일	최근조례개정	
(영월) 동강캠핑장 <동강캠핑장>		카라반사이트	40,000	40,000	35,000	2019.5.10.개정	
		오토캠핑장	30,000	30,000	25,000		
(정선) 회동국민여가캠핑장 <회동국민여가캠핑장>		데크	30,000	30,000	20,000	2021.5.27.개정	
(정선) 아우라지 관광지 야영장 <지정관광지 관람료>		노지	20,000	20,000	20,000	2020.3.30.개정	
		데크	30,000	30,000	20,000		
		캐라반 (3인)	100,000	70,000	60,000		
		캐라반 (4인)	120,000	80,000	70,000		
(강릉) 연곡해변 솔향기캠핑장 <연곡해변 솔향기캠핑장>		데크 (5*7/6인)	40,000	27,000	22,000	2020.6.10.개정	
		데크 (3.5*5/4인)	32,000	22,000	15,000		
		노지 (6인)	25,000	18,000	13,000		
		카라반 (정박형/4인/1대)	160,000	120,000	80,000		
		자동차캠핑장 (일반/6인/1대)	50,000	30,000	25,000		
(양양) 지경국민여가캠핑장 <지경국민여가캠핑장>		캐라반 (33m <sup>2</sup> /8인)	220,000	170,000	120,000	2020.4.8.개정	
		오토캠핑장 (54m <sup>2</sup> )	45,000	40,000	32,000		
		(선바위) 캠핑장 (5*3)	40,000	40,000	35,000		
		(선바위) 캠핑장 (7*4)	45,000	45,000	40,000		
(횡성) 선바위자연캠핑장, 병지방오토캠핑장 <관광시설>		(선바위) 평상 (3*2)	25,000	25,000	25,000	2021.12.31.개정	
		(병지방) 오토캠핑장	40,000	40,000	35,000		
		캐라반 (6인/고급형)	200,000	170,000	130,000		
		글램핑 (기본/2인)	140,000	110,000	70,000		
(동해) <망상오토캠핑 리조트>	오토 캠핑 리조트	글램핑 (확장/4인)	150,000	120,000	80,000	2021.12.10.개정	
		자동차캠핑장	50,000	35,000	25,000		
		제2 오토 캠핑장	캐라반 (4인/대형)	140,000	110,000		70,000
		캐라반 (6인/고급형)	180,000	150,000	110,000		
	캠핑장 (고급형)	32,000	22,000	15,000			
(가평군) 자라섬 캠핑장 <자라섬 캠핑장>		캐라반 (4인)	140,000	120,000(금:90,000)	60,000	2021.8.4.개정	
		캐라반 (6인)	180,000	160,000(금:120,000)	80,000		
		캐라반사이트	35,000	35,000(금:30,000)	25,000		
		오토캠핑장	20,000	20,000	15,000		
(가평군) 연인산 다목적 캠핑장 <연인산 다목적 캠핑장>		오토캠핑장	33,000	33,000(금:28,000)	23,000	2021.8.4.개정	
(강화군) 덕산 국민여가캠핑장 <덕산 국민여가캠핑장>		야영사이트 (1박2일)	35,000	35,000	25,000	2016.12.7.제정	
(김천시) 김천방향 뱀산내들 오토캠핑장, 중산수도계곡캠핑장 <캠핑장>		캠핑장	35,000	25,000	25,000	2020.4.2.개정	
(대전, 동구) 상소오토캠핑장 <상소오토캠핑장>		오토캠핑장	30,000	30,000	25,000	2021.10.8.개정	
(부산, 서구) 송도오토캠핑장 <송도오토캠핑장>		스파카라반 (4인)	230,000 (일~금:190,000)	190,000	(일~금)150,000	2020.12.15.개정	
		카라반 (6인)	200,000 (일~금:160,000)	160,000	(일~금)130,000		
		카라반 (4인)	170,000 (일~금:140,000)	140,000	(일~금)110,000		
		텐트 사이트	40,000 (일~금:35,000)	35,000	(일~금)30,000		
(사천시) 비토국민여가캠핑장 <캠핑장>		카라반 (6*8/4인)	200,000	150,000	100,000	2021.4.29.개정	
		글램핑 (6*8/4인)	150,000	110,000	80,000		
		단체글램핑 (12*9/16인)	400,000	360,000	240,000		
		일반야영 (6*8/4인)	35,000	30,000	25,000		
		평상 (2.4*2.4)	25,000	20,000	15,000		

# 입법예고 결과

## □ 입법예고

- 기간 : 2021.12.17. ~ 2022.1.6. (20일간)
- 의견제출
  - 제출기관 : 평창군시설관리공단 (2021.12.27.)
  - 제출의견 요지
    - 성수기를 '7월~8월'로 하고, 동절기는 제외
    - 감경율을 '20%~50%'로 세분하고, 비수기에만 적용
    - 감경 대상에 '비수기 장기체류자'를 추가

## □ 제출의견 등 반영 (일부 반영)

- 성수기를 '7.15.~8.24., 12.20.~2.20.'에서 '7.1.~8.31.'로 조정
- 감경율을 '50%'에서 '30%'로 조정
  - ▶ '감경율 세분화' 및 '비수기에만 적용'은 불합리하여 미반영
- 감경 대상에 '비수기 14일 이상 장기 이용자' 추가
  - ▶ 감경율 : 14일 30%, 15일~30일 40%, 31일 이상 50%
- 그 밖에 사항
  - '꿈의대화캠핑장'의 '야영데크' 이용료 조정
    - ▶ 감경율 : 비수기 주말/주중 40,000원/30,000원 → 35,000원/25,000원

## □ 재입법예고

- 기간 : 2022.1.14. ~ 2022.2.3. (20일간)
- 의견제출 없음

## □ 의견반영 전·후 비교표

당초 개정조례안 (당초 입법예고안)	의견반영 후 개정조례안 (재입법예고안)
<b>평창군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b> 평창군 조례 제 호	<b>평창군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b> 평창군 조례 제 호
<b>제1조(목적)</b> 이 조례는 평창군이 설치한 야영장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 및 이용료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b>제1조(목적)</b> 이 조례는 평창군이 설치한 야영장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 및 이용료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b>제2조(적용 범위)</b>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야영장 등 평창군이 설치한 야영장(이하 "야영장"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b>제2조(적용 범위)</b>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야영장 등 평창군이 설치한 야영장(이하 "야영장"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1. 방림면 방림리의 “평창국민여가캠핑장”
2. 대화면 대화리의 “꿈의대화캠핑장”
3. 용평면 노동리의 “계방산오토캠핑장”

**제3조(이용료)** 야영장 이용료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4조(이용료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의 100분의 50을 감경한다.

1.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가 이용하는 경우
2. 평창군이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를 위해 이용하는 경우
3. 강원도교육감, 평창교육지원청교육장 또는 관내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학생의 수련활동을 위해 이용하는 경우
4. 관내 사회단체가 비영리 목적으로 자체행사를 하기 위해 이용하는 경우
5. 평창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가 이용하는 경우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를 수행하기 위해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용료 전액을 면제한다.

③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약이나 정부시책에 부응하기 위한 평창군의 정책 등에 따라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5조(이용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야영장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사회질서와 선량한 풍속에 반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야영장 시설을 손상하거나 유지관리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3. 영업행위를 하거나 이용자 수칙을 위반하는 경우

**제6조(환급 등의 적용)** 사전 예약을 통해 이용료를 납부한 경우의 예약 취소 등에 따른 환급 또는 배상 등에 대하여는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3항에 따라 고시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적용한다.

**제7조(「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 준용)** ① 야영장의 관리위탁에 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및 「평창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을 준용한다.

② 이용료 징수 등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

1. 방림면 방림리의 “평창국민여가캠핑장”
2. 대화면 대화리의 “꿈의대화캠핑장”
3. 용평면 노동리의 “계방산오토캠핑장”

**제3조(이용료)** 야영장 이용료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4조(이용료 감면)** ① 이용료의 감경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편익시설의 이용료는 감경하지 않는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의 100분의 30을 감경한다.

- 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 이용하는 경우
-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가 이용하는 경우
- 다.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이 이용하는 경우
- 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가 이용하는 경우
- 마. 평창군이 주관·주최하는 행사를 위해 이용하는 경우
- 바. 강원도교육감, 평창교육지원청교육장 또는 관내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학생의 수련활동을 위해 이용하는 경우
- 사. 관내 사회단체가 비영리 목적의 행사를 위해 이용하는 경우
- 아. 평창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가 이용하는 경우

2. 비수기 중에 계속하여 장기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일수별로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비율을 감경한다.

- 가. 14일 : 이용료의 100분의 30
- 나. 15일부터 30일까지 : 이용료의 100분의 40
- 다. 31일 이상 : 이용료의 100분의 50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를 수행하기 위해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용료 전액을 면제한다.

③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약이나 정부시책에 부응하기 위한 평창군의 정책 등에 따라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④ 감면 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에서 하나만을 적용한다.

**제5조(이용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야영장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사회질서와 선량한 풍속에 반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야영장 시설을 손상하거나 유지관리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3. 영업행위를 하거나 이용자 수칙을 위반하는 경우

**제6조(환급 등의 적용)** 사전 예약을 통해 이용료를 납부한 경우의 예약 취소 등에 따른 환급 또는 배상 등에 대하여는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3항에 따라 고시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적용한다. 이 경우 성수기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로 한다.

**제7조(「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 준용)** ① 야영장의 관리위탁에 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및 「평창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을 준용한다.

② 이용료 징수 등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

항에 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야영장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별표]

**야영장 이용료** (제3조, 제4조 및 제6조 관련)

**1. 평창국민여가캠핑장(방림면 방림리)**

유형	시설	규모	이용료 장구기준	성수기	비수기	
					주말	주중
일반형	야영테크	5m×14m	1회/1일	50,000원	40,000원	30,000원
		5m×8m	1회/1일	40,000원	35,000원	25,000원
		4m×8m	1회/1일	40,000원	35,000원	25,000원
		4m×4m	1회/1일	35,000원	30,000원	25,000원

**2. 꿈의대화캠핑장(대화면 대화리)**

유형	시설	규모	이용료 장구기준	성수기	비수기	
					주말	주중
일반형	야영테크	3m×6m	1회/1일	40,000원	40,000원	30,000원
고정식		황토방1	4인/1실	150,000원	150,000원	100,000원
		황토방2	4인/1실	120,000원	120,000원	80,000원
		글램핑	4인/1실	120,000원	120,000원	80,000원
		오두막집	4인/1실	80,000원	80,000원	50,000원
		돛형텐트	4인/1실	60,000원	60,000원	40,000원
유형	시설		이용료 장구기준	주간·야간	야간	주간
편의시설	다목적채대		1일	200,000원	150,000원	100,000원

**3. 계방산오토캠핑장(용평면 노동리)**

유형	시설	규모	이용료 장구기준	성수기	비수기	
					주말	주중
일반형	야영테크	5m×7m	1회/1일	40,000원	35,000원	25,000원
		4m×4m	1회/1일	35,000원	30,000원	25,000원
		3m×3m	1회/1일	30,000원	30,000원	25,000원
오토캠핑	오토캠핑장	1개소/1일		40,000원	35,000원	25,000원
카라반형		카라반	1대/1일	120,000원	120,000원	110,000원
		카라반사이트	1개소/1일	50,000원	40,000원	25,000원
고정식		캐빈하우스	4인/1실	140,000원	120,000원	80,000원
		통나무집	4인/1실	120,000원	100,000원	70,000원
유형	시설		대상	이용료	장구기준	
편의시설	주차장		시설이용자 일반차량	1대 초과시	5,000원	
			시설이용자 카라반	1구획/1일	5,000원	

**비고**

- “성수기”와 “주말”의 기준과 예약 취소 등에 따른 환급·배상 등의 기준에 관하여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II 중 제26호의 숙박업 기준을 적용한다.  
가. 성수기 : 여름시즌 7.15. ~ 8.24., 겨울시즌 12.20. ~ 2.20.  
나. 주말 : 금요일 숙박, 토요일 숙박, 공휴일 전일(前日) 숙박
- “1일”의 시간 기준은 당일 14시부터 익일 11시까지이며, 퇴실시간을 초과할 때의 이용료 추가 기준은 다음과 같다.

초과시간별	1시간 이상 2시간 미만	2시간 이상 4시간 미만	4시간 이상
추가 이용료	10,000원	20,000원	1일 이용료

- 고정식 시설에 대하여는 기준정원을 초과하는 경우 1인당(13세 이하는 제외) 5,000원을 추가한다.
- 이용료의 감면 대상인 경우에는 감면 대상을 증명할 수 있는 증서(신분증 또는 서류 등)를 제시하여야 한다.
- 감면 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에서 하나만을 적용한다.

항에 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야영장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별표]

**야영장 이용료** (제3조, 제4조 및 제6조 관련)

**1. 평창국민여가캠핑장(방림면 방림리)**

유형	시설	규모	이용료 장구기준	성수기	비수기	
					주말	주중
일반형	야영테크	5m×14m	1회/1일	50,000원	40,000원	30,000원
		5m×8m	1회/1일	40,000원	35,000원	25,000원
		4m×8m	1회/1일	40,000원	35,000원	25,000원
		4m×4m	1회/1일	35,000원	30,000원	25,000원

**2. 꿈의대화캠핑장(대화면 대화리)**

유형	시설	규모	이용료 장구기준	성수기	비수기	
					주말	주중
일반형	야영테크	3m×6m	1회/1일	40,000원	35,000원	25,000원
고정식		황토방1	4인/1실	150,000원	150,000원	100,000원
		황토방2	4인/1실	120,000원	120,000원	80,000원
		글램핑	4인/1실	120,000원	120,000원	80,000원
		오두막집	4인/1실	80,000원	80,000원	50,000원
		돛형텐트	4인/1실	60,000원	60,000원	40,000원
유형	시설		이용료 장구기준	주간·야간	야간	주간
편의시설	다목적채대		1일	200,000원	150,000원	100,000원

**3. 계방산오토캠핑장(용평면 노동리)**

유형	시설	규모	이용료 장구기준	성수기	비수기	
					주말	주중
일반형	야영테크	5m×7m	1회/1일	40,000원	35,000원	25,000원
		4m×4m	1회/1일	35,000원	30,000원	25,000원
		3m×3m	1회/1일	30,000원	30,000원	25,000원
오토캠핑	오토캠핑장	1개소/1일		40,000원	35,000원	25,000원
카라반형		카라반	1대/1일	120,000원	120,000원	110,000원
		카라반사이트	1개소/1일	50,000원	40,000원	25,000원
고정식		캐빈하우스	4인/1실	140,000원	120,000원	80,000원
		통나무집	4인/1실	120,000원	100,000원	70,000원
유형	시설		대상	이용료	장구기준	
편의시설	주차장		시설이용자 일반차량	1대 초과시	5,000원	
			시설이용자 카라반	1구획/1일	5,000원	

**비고**

- “성수기”와 “주말”의 기준은 **아래와 같으며**, 예약 취소 등에 따른 환급·배상 등의 기준에 관하여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II 중 제26호의 숙박업 기준을 적용한다.  
가. 성수기 : **7월 1일 ~ 8월 31일**  
나. 주말 : 금요일 숙박, 토요일 숙박, 공휴일 전일(前日) 숙박
- “1일”의 시간 기준은 당일 14시부터 익일 11시까지이며, 퇴실시간을 초과할 때의 이용료 추가 기준은 다음과 같다.

초과시간별	1시간 이상 2시간 미만	2시간 이상 4시간 미만	4시간 이상
추가 이용료	10,000원	20,000원	1일 이용료

- 고정식 시설에 대하여는 기준정원을 초과하는 경우 1인당(13세 이하는 제외) 5,000원을 추가한다.
- 이용료의 감면 대상인 경우에는 감면 대상을 증명할 수 있는 증서(신분증 또는 서류 등)를 제시하여야 한다.
- 감면 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에서 하나만을 적용한다.